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가.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직종·직급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고

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 증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채정기준을 조정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91명 → 1,607명(+16명)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1) 일반직 : 1,297명 → 1,315명(+18명)

가) 5급 : 77명 → 79명(+2명)

나) 6급이하 : 1,209명 → 1,225명(+16명)

2) 기능직 : 244명 → 243명(△1명)

3) 별정직 : 13명 → 12명(△1명)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구 분	일반직						기능직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5% 이내	15% 이내	21% 이내	59% 이상
개 정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8% 이상	7% 이내	25% 이내	30% 이내	38% 이상
조 정					+1%	△1%	+2%	+10%	+9%	△2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1회추경 반영 예정, 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영

- 1) 정원조정에 따른 연간 소요경비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91명이며”를 “1,60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79명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6%이내	8%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25%이내	30%이내	38%이상

3.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50%이내	50%이상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07	1,60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15	1,315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계	1,225	1,225					
별정직 계	12	12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12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43	24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591명</u> 이며,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07명</u> 이며----- -----.
<u>1. 집행기관의 정원 : 1,563명</u>	<u>1. 집행기관의 정원 : 1,579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13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직급·부서별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주요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6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 나. 안전분야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건설과를 안전재난과와 건설과로 분과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정원증원등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2013.1.28)」에 따라 공무원 직급별 1인당 평균인건비를 산출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 나. 물건비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2012. 7월)에 따라 산정하고 기구신설에 따른 사업 예산은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 경상적경비를 위주로 추계한다.
- 다.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가.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조정할 경우 2013년 1,981,824천원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10,331,267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소계(a)						
세출	인건비	1,799,439	1,849,823	1,901,618	1,954,863	2,009,599	9,515,342
	물건비	182,385	158,385	158,385	158,385	158,385	815,925
	소계(b)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 총 비용(a-b)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981,824	2,008,208	2,060,003	2,113,248	2,167,984	10,331,267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장정수
연락처	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 및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가. 공무원 정원을 16명을 증원하고 2개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나. 1인당 인건비 기준은 「13년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고 매년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다. 물건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2개과 신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등을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추정하였다.

【직급별 기준액 산출】

<단위:천원>

직급	일반직				기능직				비고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액	67,581	58,616	37,564	30,849	67,581	58,636	38,923	32,464	

나. 산출내역

○ 인건비

구분		인원	산 출 내 역
계			1,799,439천 원(연간소요액)
정원 증원	일반 직	16	○ 소계 : 880,857천 원 - 5급 : 83,145천 원 × 2명 = 166,290천 원 - 6급 : 67,581천 원 × 4명 = 270,324천 원 - 7급 : 58,616천 원 × 6명 = 351,696천 원 - 9급 : 30,849천 원 × 4명 = 92,547천 원
직급 조정	일반 직	19	○ 소계 : 503,905천 원 - 7급 → 6급 : (67,581천 원 - 58,616천 원) × 2명 = 17,930천 원 - 9급 → 6급 : (67,581천 원 - 30,849천 원) × 7명 = 257,124천 원 - 8급 → 7급 : (58,616천 원 - 37,564천 원) × 1명 = 21,052천 원 - 9급 → 7급 : (58,616천 원 - 30,849천 원) × 7명 = 194,369천 원 - 9급 → 8급 : (37,564천 원 - 30,849천 원) × 2명 = 13,430천 원
	기능 직	20	○ 소계 : 414,677천 원 - 9급 → 6급 : (67,581천 원 - 32,464천 원) × 3명 = 105,351천 원 - 9급 → 7급 : (59,216천 원 - 32,464천 원) × 9명 = 249,768천 원 - 9급 → 8급 : (38,164천 원 - 32,464천 원) × 7명 = 39,900천 원 - 8급 → 6급 : (67,581천 원 - 38,923천 원) × 1명 = 28,658천 원

○ 물건비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계	182,385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5천원	- 본청 15천원 × 12명 = 225천원 - 출장소 40천원 × 1명 = 40천원 - 사업소 40천원 × 1명 = △40천원 - 읍면동 40천원 × 4명 = 16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천원	- 100천원 × 2명 × 12월 = 2,4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천원	- 350천원 × 2과 × 12월 = 8,400천원
특정업무경비	9,600천원	- 50천원 × 16명 × 12월 = 9,600천원
일반운영비	80,000천원	- 40,000천원 × 2과 = 80,000천원
여비	57,600천원	- 300천원 × 16명 × 12월 = 57,600천원
자산취득비	24,000천원	○ 개인집기 - 1,000천원 × 16명 = 16,000천원 ○ 사무실집기 - 4,000천원 × 2과 = 8,000천원

※ 기구신설에 따른 비용 중 개별 사업예산은 현시점에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추계에서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를 위주로 산정함